

# 귀하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다면

# 꼭!

# 알아야 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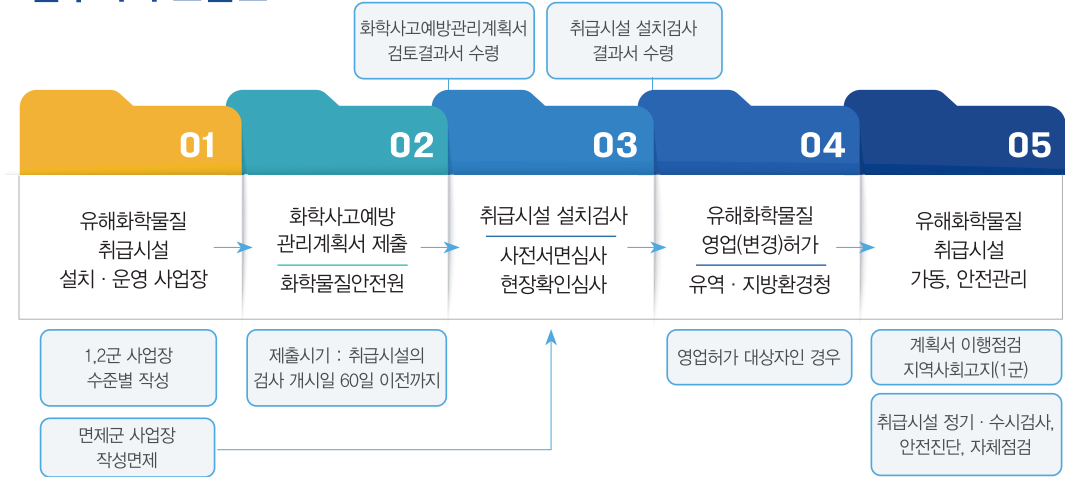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취급시설 검사란?
- 영업허가란?
- 화학물질 취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관련 주요 준수사항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업무처리 흐름도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구분	세부내용	
작성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1군, 상위 규정수량 미만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2군.(※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 작성면제)	
제출시기	신규시설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재제출의 경우 적합 받은 날부터 5년 이내(1군만 해당)
	변경시설	변경 완료 30일 이전 [변경제출 대상]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이설, 물질변경 등의 사유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② 2군에서 1군으로 바뀌는 경우
작성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	
심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https://nics.me.go.kr)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s://ncis.nier.go.kr) 에서 유해화학물질 목록 확인가능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구분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작성자, 이행자 (방재전문요원, 안전환경요원 등)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2년	안전교육 지정·고시 전문기관
	적합 후 전문교육 총합 16시간 이상/5년 이내	화학물질안전원

※ 기존 장외·위해 교육이수자나 안전원에서 정하는 전문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보수교육 3시간 이수 필요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법 제23조 , 시행규칙 제19조)

구분	해당시설	관련근거
①	연구실, 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②	하위 규정수량(LT)미만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환경부고시)
③	운반·운송하는 차량	상·하차 차량은 제외되지 않음
④	운송·보관 시설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⑥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
⑦	항만시설(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 받은 경우)	항만법 제2조
⑧	철도시설(지체없이 반출한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⑨	농약판매업 목적 보관 진열시설	농약관리법 제3조
⑩	항공시설(항공보안법 상 보호구역 내)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⑪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 ■ 이행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구분	적용대상	점검시기	비고	
자체 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1회 이상	2군은 자체보관	
정기 이행점검	서면점검	1군	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 이행확인 결과 제출	적합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현장점검	1군 '가'위험도	적합 후 5년 이내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특별 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선정	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비상대응계획 이행 여부 확인) ② 자체 이행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③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지역사회고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구분	주요사항
대상	1군 사업장
방법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a href="https://icis.me.go.kr">https://icis.me.go.kr</a>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1
시기 (매년 1회 이상)	최초 : (필수) 적합 후 3개월 (추가) 적합 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 : 최초 등록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구분	세부내용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a href="https://www.safechem.or.kr">https://www.safechem.or.kr</a>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a href="https://www.kosha.or.kr">https://www.kosha.or.kr</a> , 온라인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 <a href="https://cyber.kgs.or.kr">https://cyber.kgs.or.kr</a> , 온라인 신청)
검사시기	① (설치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② (정기 검사) 영업자는 매년, 非 영업자는 2년 마다 ③ (수시 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어 환경청에서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 ④ (안전 진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가' 위험도(매 4년), '나' 위험도(매 8년), '다' 위험도(매 12년) 등
검사방법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 확인검사 실시
미 이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28조)

구분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은 제외) 영업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 유역(지방)환경청, 각 지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미 이행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II.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의 주요 책무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인 경우에는 그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규정별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고시·훈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화학물질 수입자

공통사항	(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법 §9) → 화학물질관리협회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10) → 관할 환경청(통계청 시스템에 등록), 매 2년 (다)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관서 등 (레)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②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등에 표시(법 §16) ③ 금지물질 수입금지(법 §18) - 다만, 시약의 경우에만 취급허가 후 수입 가능 → 관할 환경청 ④ 수입신고·허가(법 §20) → 관할 환경청 -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 ⑤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참조

### ■ 화학물질 제조자

공통사항	(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법 §9) → 화학물질관리협회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10) → 관할 환경청(통계청 시스템에 등록), 매 2년 (다)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관서 등 (레)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① 40개 업종(415종 취급) 대기·폐수관련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법 §11) → 관할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조사시스템 등록)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 환경부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③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법 §16) ④ 금지물질 제조금지, 다만, 시약의 경우에만 취급허가 후 제조 가능(법 §18) → 관할 환경청 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법 §28) → 관할 환경청 - 기술인력 선임(법 §28),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시 도급신고(법 §31)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⑥ 취급시설 안전관리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사항> - 개인보호장구 착용(법 §1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설치검사 60일전, 법 §23)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법 §23조의2)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법 §23조의3)

-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시설검사 및 안전진단(법 §24) → 검사기관
- 취급시설 등의 점검(법 §26) → 사업장 자체(주1회)
- 취급중단, 휴업 · 폐업시 신고(법 §34)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 안전교육(16시간/2년)과 작성자 전문교육(16시간) 이수

⑦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 화학물질 사용자

공통사항	<p>(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10) → 관할 환경청(통계청 시스템에 등록), 매 2년</p> <p>(나)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관서 등</p> <p>(다)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 보관(법 §50)</p>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p>① 40개 업종(415종 취급) 대기 · 폐수관련 배출시설 설치 · 운영하는 경우  <b>화학물질 배출량조사</b>(법 §11) → 관할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조사시스템 등록)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 → 환경부</p> <p>② <b>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b>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p> <p>③ <b>유해화학물질 용기 · 포장, 보관 · 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b>(법 §16)</p> <p>④ <b>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b>(법 §28) → 관할 환경청        - 기술인력 선임(법 §28, 10인 미만 제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시 도급신고(법 §31)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 지역별 사용량별 면제규정 참조(시행규칙 §3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p> <p>⑤ <b>취급시설 안전관리</b>        ※ “화학물질 제조사”의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사항” 참조</p> <p>⑥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p>

## ■ 화학물질 보관·저장자

공통사항	<p>(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10) → 관할 환경청(통계청 시스템에 등록), 매 2년</p> <p>(나) 화학사고시 즉시(15분 이내) 신고(법 §43) →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관서 등</p> <p>(다)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 보관(법 §50)</p>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 저장하는 경우	<p>① 40개 업종(415종 취급) 대기 · 폐수관련 배출시설 설치 · 운영하는 경우  <b>화학물질 배출량조사</b>(법 §11) → 관할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조사시스템 등록)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 제출 → 환경부</p> <p>② <b>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b>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p> <p>③ <b>유해화학물질 용기 · 포장, 보관 · 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b>(법 §16)</p> <p>④ <b>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b>(법 §28) → 관할 환경청        - 기술인력 선임(법 §28),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시 도급신고(법 §31)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p> <p>⑤ <b>취급시설 안전관리</b>        ※ “화학물질 제조사”의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사항” 참조</p> <p>⑥ 실적보고(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p>

## ■ 화학물질 운반자

공통사항	(가) <b>화학사고시 즉시</b> (15분 이내) <b>신고</b> (법 §43) →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관서 등 (나) <b>화학물질 관리대장</b>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① 40개 업종(415종 취급) 대기·폐수관련 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b>화학물질 배출량조사</b> (법 §11) → 관할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조사시스템 등록)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 → 환경부 ② <b>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b>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③ <b>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b> 작성·제출(법 §15) → 관할 환경청(시스템 등록) ④ <b>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운반차량에 표시</b> (법 §16) ⑤ <b>취급시설</b> 관리기준 준수, 시설검사 및 안전진단(법 §24) → 검사기관 - 취급시설 등의 점검(법 §26) → 사업장 자체(주1회) ⑥ <b>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b> (법 §28) → 관할 환경청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8시간/2년) ※ 1회 운반량 1톤 이하인 경우 영업허가 면제(시행규칙 §31) ⑦ <b>실적보고</b> (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 화학물질 판매자

공통사항	(가) <b>화학사고시 즉시</b> (15분 이내) <b>신고</b> (법 §43) → 지방환경관서 및 소방관서 등 (나) <b>화학물질 관리대장</b> 작성·보관(법 §50)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① <b>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b> 준수(법 §13)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 추가 준수(법 §40) ② <b>진열·보관</b> 하려는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작성·제출(법 §15) → 관할 환경청 - 일정량 이하인 경우 진열·보관계획서 작성 면제 - 보관시설 구비 ③ <b>금지물질 판매금지</b> , 다만, 시약의 경우에만 취급허가 후 판매 가능(법 §18) → 관할 환경청 ④ <b>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에 표시</b> (법 §16) ⑤ <b>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b> (법 §28) → 관할 환경청 - 기술인력 선임(법 §28), 유해화학물질관리자(법 §32)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및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술인력 선임의무 면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법 §33) ⑥ <b>통신판매</b> 하려는 경우 본인인증 체계 구축(법 §28의2) ⑦ <b>유해화학물질인 시약을 판매</b> 하려는 경우 - 구매자에게 용도제한 및 취급기준 준수의무 고지(법 §29의2) - <b>시약판매업 신고</b> (법 §29의3) → 관할 환경청 ⑧ <b>실적보고</b> (법 §49, 시행규칙 §53) → 화학물질관리협회(매년) ※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 취급시설 관리에 관한 책무 및 배출량조사 이행 → “화학물질 제조자”의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주요 사항” 및 “배출량조사” 참조



## ■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기관명	관할구역	연락처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	전국	043-830-4317, 4234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경기(시흥·안산 제외)	031-790-2876
영업 허가 및 수입 신고 (허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경남(하동·남해 제외)	055-211-1664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세종, 충북(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충남	042-865-0761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전남(여수·순천·광양 제외), 제주	062-410-5261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충북(충주·제천·괴산·음성·단양)	033-760-6447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경북(영천·경산·경주·고령·청도·포항·청송·영덕·영양·울진·봉화·울릉)	053-230-6596
	전북지방환경청	전북(군산·익산 제외)	063-238-8932
	시흥합동방재센터	인천, 경기(시흥·안산)	031-470-2416
	울산합동방재센터	울산, 양산	052-228-5805
	서산합동방재센터	충남(아산·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보령)	041-661-5801
	여수합동방재센터	전남(여수·순천·광양), 경남(하동·남해)	061-690-1620
	구미합동방재센터	경북(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문경·군위·의성·성주·칠곡·예천)	054-459-1175
	익산합동방재센터	전북(군산·익산)	063-839-5213
	충주합동방재센터	충북(제천·충주·괴산·음성·단양)	043-870-5982
	시설 검사	한국환경공단	전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052-703-0599, 0595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043-750-1236, 1237, 1339, 1375, 1379